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IUU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글로벌수산대학원

어업생산학과

하 봉 수

이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IUU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장 창 익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7월

부경대학교 글로벌수산대학원

어업생산학과

하 봉 수

하봉수의 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14일



위 원 장 이학박사 이 성 일 (인)

위 원 이학박사 이 경 훈 (인)

위 원 이학박사 장 창 익 (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2장 IUU 어업의 실태	4
제1절 IUU 어업의 정의	4
1. 불법(Illegal) 어업	4
2. 미보고(Unreported) 어업	4
3. 비규제(Unregulated) 어업	5
제2절 원양어선의 IUU 어업 지정배경 및 사례	6
1. 미국의 지정현황 및 사례	6
가. 지정배경	6
나. 지정현황	7
2. EU 지정현황 및 사례	21
가. 지정배경	21
나. 지정현황	21
3. 우리나라 지정배경 및 사례	26
가. 우리나라 IUU 실태	26
나.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IUU 어업 주요사례	29
다. 지정배경	36

제3장 IUU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현황 및 개정방향	38
제1절 원양산업발전법의 제·개정 현황	38
제2절 IUU 관련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 방향	40
1. 중대한 위반	40
2. 즉각적인 조치	42
3. 전재허가(변경) 제도	47
4. 어종별 10% 규정	49
5. 어선위치추적장치	52
제4장 결 론	59
참고문헌	62
부 록	64
1. 원양산업발전법 제·개정 연혁	65
2. 우리나라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s) 가입 현황	70
3. 항구국 조치협정 주요내용	71

A Study on the IUU Fishery by Korean Distant Water
Fishing Vessels

- Bong Su Ha -

Graduate School of Global Fisheries Department of
Fisheries Production, Pukye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US has pre-identified Korea as an IUU supporting country in January 2013, since the low level of punishment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illegal fishing activities conducted by Korean distant water fishing vessels in the Antarctic area and also the objection to the listing of Korean vessels as an IUU vessel of the Convention for the Commission of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In addition, Korean vessels committed various forms of illegal fishing activities in West African waters in 2011 and 2012, including unlicensed

fishing, violations of applicable rules and regulations, fishing operations in closed areas, false documents, illegal transshipment, etc. As Korea did not have a fisheries monitoring center to effectively control Korean distant water fishing vessels, which were not fully equipped with VMS on board, European Union (EU) also pre-identified Korea as a non-cooperating third party in November 2013.

This study reviewed international and domestic cases of pre-identification as a non-cooperating third country, and the relevant causes of the pre-identifications. It was found out that one of the most critical reasons was the lack of the control system of pre-identified countries over their fishing vessel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IUU fishing by Korean distant water fishing vessels, Korea has newly inserted Paragraph 2 of Article 12 (Control over Korean nationals) in the Korean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DWFD) Act as of January 6 2015, for the purpose of rigorous management of Korean nationals working on board foreign fishing vessels.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challenges regarding the amendment of the Korean DWFD Act to be taken off

from the pre-identification list as a potential IUU nation. Recently, amended provisions of distant water fisheries regulation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Taiwan were mostly in line with the EU IUU Control Regulation, while the Korean DWFD Act was also much similar to the EU IUU Control Regulation, except for the provisions on the overseas invest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 penalty provisions set out in Paragraph 2 of Article 1 (Serious infringement) of the Korean DWFD Act should be further specified; ii) a thorough investigation of any suspicious IUU cases should be prioritized regarding Paragraph 9 of Article 9 (Immediate measures) of the Act; iii) transshipment approval system set out in Paragraph 2 of Article 16 of the ACT should be changed considering the notification system; iv) the 10 % margin set out in Paragraph 2 Article 16 of the Act should apply to all fish species; v) provisions on vessel monitoring system (VM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order to re-amend the Korean DWFD Act in an effective and efficient way.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IUU에 관한 연구

하봉수

부경대학교 글로벌수산대학원 어업생산학과

요 약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2011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협약 (Convention)수역 내에서 불법어업을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약한 제재조치와 해당선박의 CCAMLR IUU 선박리스트 등재 반대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13년 1월 예비 IUU 어업가담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서아프리카에서는 '11년, '12년 보존관리조치 위반, 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및 금어기 조업, 위조문서 사용, 불법 전채 등으로 IUU 어업을 자행하였다. 조업감시센터 부재, VMS 일부 미설치, 약한 제재조치 등을 이유로 '13년 11월에는 EU로부터 IUU 예비 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및 외국의 IUU 어업 지정배경과 각각의 사례들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나라마다 자국 어선의 IUU 어업에 대한 통제 부족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라의 IUU 어업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처 방법은 2015.1.6.일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자국민 통제 및 관리) 조항이 신설되어, 우리나라 국적 선원이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조업 시에도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이다.

둘째,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최근 동남아권역의 원양어업과 관련된 법 (특히 대만) 내용은 선진국인 EU의 IUU 통제법과 매우 유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투자 관련 조문만 제외하고는 EU의 IUU 통제 관련 규정들과 흡사하였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선을 위해 1) 중대한 위반(13조제2항)의 벌칙규정의 세분화가 필요하며, 2) 즉각적인 조치 (제13조제9항)에 있어서는 의심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철저한 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3) 전재허가 (변경) 제도 (제16조제2항)는 신고제도로 개정이 필요하며, 4) 어종별 10% 규정 (제16조2항)을 모든 어종에 10%로 적용해야 하며, 5) 어선위치추적장치 (Vessel Monitoring System, VMS)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선을 위해 1) 중대한 위반(13조제2항)의 벌칙규정의 세분화가 필요하며, 2) 즉각적인 조치 (제13조제9항)에 있어서는 의심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철저한 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3) 전재허가 (변경) 제도 (제16조제2항)는 신고제도로 개정이 필요하며, 4) 어종별 10% 규정 (제16조2항)을 모든 어종에 10%로 적용해야 하며, 5) 어선위치추적장치 (Vessel Monitoring System, VMS)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최근 세계의 해양어업은 남획과 환경악화 등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지역수산물기구 (RFMO,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들과 비정부 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연안국 등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 중의 하나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 무엇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지가 최대의 고민거리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자료에 의한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의 규모를 보면, 매년 IUU 어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100~2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AO, 1998). 한편, 2015년 해양수산부의 원양어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100~2,600만 톤의 어획량으로 세계 총 어업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양이다 (해양수산부, 2015).

1999년 FAO 수산위원회 (COFI)에서 IUU 어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2001년 동 위원회에서 IUU어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국제행동계획으로써 제 23차 FAO 수산위원회 요청으로 IPOA-IUU가

승인되면서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 (IUU)어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 (EU)으로부터 남극, 서부아프리카 수역 등에서 한국선박들의 IUU어업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과 한국 정부의 IUU어업 근절 의지 등에 문제를 제기하여 비협력적 제 3국으로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 그 후, 원양어업으로 인하여 실추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포함한 타국적선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실천하여 미국으로부터는 2016년 1월에, EU로부터는 같은 해 4월에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불법조업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미국과 EU에서 IUU 어업국 지정국가들의 위반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IUU 어업의 재발 방지에 목적이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원양어업의 IUU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 개선부분에 있어서 펼친 정책들 중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 조문들을 점검하고, 문제점 파악과 향후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2013년 미국과 EU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원양어업종사자들이 불합리하다는 조문과 여론 등의 의견 수렴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의 필요 부분을 언급하면서 현 입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을 탈피하였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에 의하여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연구 성과물인 원양산업과 관련 된 기본서와 논문 그리고 정부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조사한 각종 자료들과 해양수산부, (특)한국원양산업협회, 해양수산개발원 (KMI) 등과, NGO 단체인 환경정의재단, 세계자연기금 등에서 발행한 간행물, 기타 문헌 등을 검토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하였고, 본인이 조업감시센터 (FMC) 설립에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원양산업종사자들과의 직·간접적인 상호작용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제2장 IUU 어업의 실태

제1절 IUU 어업의 정의

IUU 어업은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의 약자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뜻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서는 IUU 어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해양수산개발원, 2014).

1. 불법 (Illegal)어업

불법어업이라 함은 첫째,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하며, 둘째, 국제수산기구의 가입국 선박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을 의미하고 셋째, 국제수산기구에 협력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 법규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을 의미한다.

2. 비보고 (Unreported)어업

비보고어업이란 첫째,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둘째,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3. 비규제 (Unregulated)어업

비규제어업이라 함은 첫째,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선박, 비가입국 또는 실질적인 비가입국의 국적선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벗어나게 행동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을 의미하고 둘째,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어족자원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어업활동을 의미한다.

제2절 원양어선의 IUU 어업 지정배경 및 사례

1. 미국의 지정현황 및 사례

가. 지정배경

미국 상무부 장관은 2006년 개정된 수산자원보존관리법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authorization Act of 2006: MSRA)의 국제조항에 근거하여 IUU 어업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는 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미국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미 상무부 장관은 2013년에 '11~'12년 IUU 어업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는 선박의 행위 및 그 기국의 대응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IUU 가담국가로 10개국 (에콰도르, 이탈리아, 콜롬비아, 가나,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한국)을 등재하였고, 해당 국가별 IUU 어업 사례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박민규, 2016).

2015년에 미국 상무부 장관은 2013년 IUU 가담국가로 지정된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가나, 파나마, 탄자니아, 베네수엘라의 지정 해제를 발표하였다. 한국은 지난 2년간 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제재조치 강화 ② 한국 국적 원양 어선단 전체에 VMS (선박위치추적시스템, Vessel Monitoring System) 설치 ③ 조업감시센터 설립 ④ “IUU근절을위한국가행동계획” 개정 ⑤ 항구 검색 제도 수립 ⑥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 ⑦ 국제사회 기여 증진 ⑧ NGO (비정부기구,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등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⑨ 업계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등 지적 사항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격 증명 (지정 해제) 되었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는 IUU 가담국가로

재지정, 니카라과, 포르투갈, 나이지리아는 신규 지정되었으며, 해당 국가별 IUU어업 사례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나. 지정현황

1) 에콰도르

미국해양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은 2009년에 발생한 에콰도르 어선의 IUU 어업을 사유로 2011년에 에콰도르를 IUU 가담국가로 지정하였다. 2009년에 에콰도르 국적 어선 3척은 IATTC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보존관리조치 동부태평양 수역 다랑어보존 다년도 계획에 관한 결의 (C-09-01)를 위반하여 금어기 (9월29일~10월29일)에 조업하였고, 선망선 3척은 IATT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협약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선박 관리를 위한 관리조치 지역 선박 등록부에 관한 결의 (C-00-06)를 위반하여 IATTC 협약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하였다.

이후, 에콰도르 정부는 IATTC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여 금어기에 조업한 어선의 선주, 선장에게 벌금 1,000\$ 및 30일 어업정지, 무허가 조업 어선에게는 1년 어업정지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에콰도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어선들의 IUU 어업이 계속됨에 따라 효과적으로 IUU 어업에 대해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을 사유로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상어자원의 보존을 위해 미국은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자른 후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행위인 샤크피닝 금지법 (Shark Finning Prohibition Act of 2000, 공법 106-557)과 상어보호법 (Shark Conservation Act, 공법 111-348), EU는 EC-IUU 통제법, 지역수산물관

기구는 각 기구별 보존관리조치를 통해 샤크피닝을 금지하고 있으나, 에콰도르 국적의 선박이 IATTC 보존관리조치인 동부태평양 혼획 상어 보존에 대한 결의 (C-05-03)를 위반하였고, 상어 14마리 지느러미를 절단한 후 몸통을 바다에 폐기하였으며, '12년 1월에는 동부 태평양 및 전 세계 대양에서 기상 및 해양 관측을 위한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만든 데이터 부이의 근처 조업금지에 관한 결의 (C-11-03)를 위반하고 조업 금지구역에서 총 13회 조업하였으며 참치선망어선 11척은 앞선 에콰도르 국적 어선 3척이 위반한 동부태평양 수역 다랑어 보존 다년도 계획에 관한 결의 (C-11-01)를 위반하고 57회에 걸쳐 216.1톤의 다랑어를 선상에서 폐기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IUU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해 '13년~'14년 비조업기에 원양어선 선장들을 대상으로 IATTC 보존관리조치 교육을 실시하는 반면, IUU어업 가담 어선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60일내 처벌이 가능한 에콰도르 법규로 인해 처벌할 수 없었다. 아울러, 에콰도르 정부는 IUU 어업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선원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하였고, NMFS는 이러한 에콰도르 정부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13년~'14년 에콰도르 어선들의 새로운 IUU 어업활동으로 인해 2015년 IUU어업 가담국가로 재지정하였다.

IUU어업국 재정한 불법어업 사례를 살펴보면, 에콰도르 국적어선 2척은 IATTC 보존관리조치인 데이터 부이 근처 조업금지에 관한 결의 (C-11-03)를 위반하여 금지구역에서 조업하였으며, ○○호 등 6척의 어선은 혼획 방지에 관한 IATTC 보존관리조치 C-04-05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불법어업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정부는 다랑어 선상폐기 협의의 일부어선에 대해서는 다랑어 폐기가 아닌 미끼로 사용하였으며,

바다거북 혼획 혐의 2척에 대해서는 증거 없음을 주장하고 무혐의 처분하였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불법 혐의가 있는 ○○호는 허가기간 만료된 후에도 30일간 조업을 계속하였고, 폐쇄수역을 향해하여 위반한 사항에 대해 벌금 3,400\$ 부과하였으며, 다랑어 16톤을 해상 투기한 어선에 벌금 1,700\$, 폐기물 투기를 2차례 실시한 어선에 벌금 2,380\$, 1,700\$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NMFS는 처분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Table 2-1. Catch limit on bigeye tuna by purse seine vessels

Nation	Catch limit from 2011 to 2013 (Unit: tonnage)
China	2,507
Japan	32,372
Rep. Korea	11,947
Taiwan	7,555

에콰도르 정부는 폐기물 투기 혐의어선 11척 및 바다거북 미방류 혐의 어선 7척에 대해 조사하였지만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NMFS (미국해양수산청)는 2013년에 '11년~'12년 IUU 어업 발생, IUU 어업에 대한 조치결과 미흡 등을 이유로 에콰도르를 IUU 가담국가로 다시 지정하였다.

2) 이탈리아

ICCAT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은 2003년부터 협약수역에서 수마일에 이른 긴 그물로 혼획과 바다새, 바다거북 등 각종 부어류가 걸려

죽어 해양환경에 피해를 주는 유자망 어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어선은 지중해에서 유자망어업을 지속하여 2009년, 2011년 두 차례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길이 최대 2.5km, 망목크기 100mm를 넘지 않는 유자망을 해안 3마일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2011년 10마일이 넘는 유자망을 사용한 선장에게 2,000€의 벌금, 5년간 유자망어업을 계속한 선장에게는 4,000€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1년에 69,000척 어선 (허가유예어선 포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위반행위 3,132건 (중대한 위반행위 464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유자망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96건이었다. 2012년에는 42,000척의 어선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위반행위 2,168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유자망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18건으로 해당 어선들에게 벌금 4,000€, 허가정지 1~3개월을 부과했다. 2012년 6월 이탈리아 선망선 ○○호에서 참다랑어 미성어 25톤이 발견되었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해당 어선에 어획물 압수,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NMFS는 이탈리아 정부가 IUU 어업 어선들에게 벌금, 허가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이탈리아 어선들의 계속되는 IUU 어업활동, IUU 어업 방지를 위한 충분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음을 이유로 2013년에 IUU 가담국가로 지정하였다.

3) 콜롬비아

NMFS는 콜롬비아를 2009년 IATTC 보존관리조치의 동부태평양 수역 다랑어보존 계획에 관한 결의 (C-09-01) 및 지역 선박 등록부에 관한 결의 (C-00-06)의 위반 이유로 2011년 IUU 가담국가로 지정하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IUU 어업 예방·방지·제거를 위해 IATTC 보존관리조

치를 채택,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며 위반어선 2척의 어업허가권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11년~'12년 콜롬비아 어선들의 IUU 어업은 계속되었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면, 콜롬비아 어선 3척은 IATTC 보존관리조치 C-05-03을 위반, 상어 26마리의 지느러미를 절단한 후 사체를 폐기하였고, 다른 어선 3척은 IATTC 보존관리조치인 우발적 혼획의 감소를 위한 CPCs동의에 대한 결의 (C-04-05)를 위반, 폐기물을 해상투기 하였으며, ○○호 등 2척은 동태평양 해역에서 등록되지 않은 어선으로 조업하였고, ○○호 등 7척은 IATTC 보존관리조치 11-01을 위반하여 17차례에 걸쳐 다랑어 22.4톤을 선상에서 폐기하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선상폐기에 대해서 생존가능성이 없는 어획물의 선상폐기를 금지하는 콜롬비아법과 식용에 부적합한 어류를 제외한 눈다랑어, 가다랑어 및 황다랑어의 선상폐기를 금지하는 IATTC 보존관리조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NMFS에 알렸으나, NMFS는 '13년에 콜롬비아 어선들의 '11년~'12년 IUU 어업과 국제수준에 낮은 제재조치 등을 이유로 콜롬비아를 IUU어업국으로 지정하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지정된 IUU 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해 2011년 샤크피닝에 가담한 선박 3척의 선주, 허가소지자, 선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상어 24마리를 샤크피닝한 1척의 어선은 약 60,500\$, 다른 2척 어선은 약 2,500\$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13년 4월 항구 도착시 항만국 검색을 어종 확인을 위한 '지느러미 절단 금지 결의' (375호)를 채택하고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IATTC 보존관리조치를 검토하여 콜롬비아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NMFS는 콜롬비아 정부의 IUU 어업에 대한 처벌 및 교육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13년~'14년 콜롬비아 어선들의 새로운 IUU 어업으로 2015년 IUU어업 가담국가로 재지정하였다.

IATTC 보존관리조치 C-12-01에 따르면 동부태평양 수역 내에서 황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를 조업하는 선망선은 금어기동안 항구에 정박해 있거나 동부태평양에서 조업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출항이 허가되며, 이 경우 AIDCP (국제돌고래보존프로그램협정,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Dolphin Conservation Program)의 승선 옵서버 프로그램을 통해 파견된 옵서버가 동 선망선에 승선해야 한다. 그런데, '13년 콜롬비아 국적의 선망선 3척은 IATTC 보존관리조치인 동부태평양 수역 다랑어 보존 다년도 계획에 대한 결의 (C-12-01)를 위반하고 옵서버의 승선 없이 금어기에 출항하였다. 또한, 같은 해 7월 IATTC 보존관리조치인 혼획에 대한 통합결의 (C-04-05)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상에 투기하였으며, 2014년 콜롬비아 어선이 IATTC 보존관리조치 데이터 부이 근처 조업 금지에 관한 결의 (C-11-03)를 위반하여 금지구역에서 조업하는 등 반복적 IUU어업에도 국가의 통제관리 미흡을 이유로 IUU 어업 가담국가로 재지정하였다.

4) 가나

'11년~'12년 가나의 원양어선은 ICCAT 통계 보고 의무 준수에 관한 권고안 05-09를 위반하여 자료보고를 지연하거나 미보고 하였다. 또한 2004년 눈다랑어 쿼터를 배정받은 이후 계속해서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다년도 보존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ICCAT 권고안 11-01을 위반, 눈다랑어를 초과 어획하였다.

ICCAT 권고안 11-01은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기여를 위해 어획량, 어획선박 관리, 제어하는 설명으로 아래 표와 같다.

Table 2-2. Catch limit on bigeye tuna (limitations on the maximum number of longline and purse seine vessels

CPC	Longline vessel (Number)	Purse seine vessel (Number)
China	45	-
EU	269	34
Ghana	-	13
Japan	245	-
Panama	-	3
Philippines	11	-
Rep. Korea	14	-
Taiwan	75	-

Table 2-3. Catch limit on bigeye tuna

CPC	Catch limit from 2012 to 2015 (unit: Tonnage)
China	5,572
EU	22,667
Ghana	4,722
Japan	23,611
Panama	3,306
Philippines	1,983
Rep. Korea	1,983
Taiwan	15,583

가나 국기를 게양한 어선 3척은 다른 국가의 관할구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금지하여 자국 선박이 타국의 관할 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지 않도록 해당 연안국과의 적절한 협력 및 기타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장한다는 내용의 ICCAT 권고안 03-12를 위반하여 라이베리아 EEZ (배타적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불법조업 및 해상전채를 하였다.

NMFS는 2013년에 가나의 ICCAT 권고안에 부합하는 어선관리 실패를 이유로 IUU 가담국가로 지정하였다.

5) 멕시코

'11년~'12년에 멕시코 국적의 어선 ○○호는 상어자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IATTC 보존관리조치 C-05-03을 위반하여 상어 지느러미 절단 후 몸통을 폐기하였는데, 멕시코 정부는 해당 어선에게 2,220,570페소 (약 \$165,000)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호 등 어선 13척은 바다거북의 혼획 방지를 위해 소금자루, 폐기물 해상 투기 금지 및 혼획된 바다거북의 방류를 권고한 IATTC 보존관리조치 C-04-05를 위반하여 폐기물 해상 투기 및 혼획된 바다거북을 방류하지 않았으며, 기타 어선 2척은 IATTC 보존관리조치 C-11-01을 위반하여 4회에 걸쳐 총 7톤의 다랑어를 해상 투기하였다.

'12년 멕시코 해안에서 붉은바다거북 438마리의 사체가 발견되어 멕시코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자망어업으로 인해 혼획된 바다거북이로 밝혀졌으며, 동 연구기관에서는 매년 자망어업 혼획으로 인한 바다거북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자망어업 선박에 대해 조사 후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으나, 이후 조사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결

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NMFS는 멕시코의 자망어업에 대한 대책마련 부족 등을 이유로 2013년에 IUU 어업 가담국가로 지정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IUU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해 '11년~'12년 IUU 혐의 어선 8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샤크피닝 혐의 어선 1척에 대해 벌금 약 165,000\$를 부과하였으며, 혼획된 바다거북 미방류 혐의어선 5척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해당어선들은 바다거북 혼획 후 방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다랑어 선상폐기 혐의 어선 2척은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크기의 다랑어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IATTC 보존관리조치 C-12-01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발표하였다.

당초, NMFS는 멕시코 정부가 IUU 어업 지정해제를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IUU어업국 재지정 불법어업 사례를 보면 '13년 USCG (미국 해안경비대, United State Coast Guard)가 체포한 멕시코 어선은 미국 EEZ 인근 수역에서 보호종인 붉은통돔 1,418마리, 그루퍼 5마리, 타이거피쉬 4마리를 어획하여 2015년 IUU어업 가담국가로 재지정하였다.

6) 파나마

NMFS는 파나마를 IATTC 보존관리조치 C-09-01 및 C-00-06 위반을 이유로 2009년 IUU어업 가담국가로 지정하였다.

파나마 정부는 IUU 가담국가 지정해제를 위해 금어기 조업어선 1척 및 무허가 조업어선 1척에 각각 500,000\$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금어기 조업어선 혐의 1척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발표하였다. NMFS는 '12년 10월 파나마 정부에 IUU 가담국가 지정해제에 대한 긍정적인 공문을 전달하였으나, '11년~'12년 발생한 파나마 어선들의 반복된 IUU 어업으로 2013년 IUU어업 가담국가로 다시 지정하였다.

IUU 어업국 재지정 관련 불법어업 사례를 살펴보면, ‘11년~’12년 파나마 어선 ○○호는 상어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IATTC 보존관리조치 C-05-03을 위반하고 상어 지느러미 절단 후 몸통을 폐기하였다. ○○호 등 3척은 다랑어 미성어, 비목표어종, 바다거북 등의 혼획에 관한 IATTC 보존관리조치 C-04-05를 위반하고 폐기물을 해상 투기 하였다. 또한, ○○호 등 2척은 IATTC 보존관리조치 C-11-01을 위반하고 14회에 걸쳐 총 22.8톤의 다랑어를 선상 폐기하였으며, ○○호 등 3척은 지역 수산물관리기구 선박등록부에 어선을 등재하지 않고 태평양 동부에서 조업하였다. 기타 어선 1척은 CCAMLR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58.5.2 해역에서 금어기에 조업하였다.

7) 스페인

2011년 8월 스페인 어선 ○○호는 IATTC 보존관리조치 C-11-01을 위반하여 약 1톤의 가다랑어를 선상에서 폐기하였다. 2012년 3월 NAFO (북서대서양수산기구,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조사관은 스페인 어선 ○○호에서 발견된 약 134.7톤의 어획물 및 30.2톤의 그린랜드 넙치에 NAFO 보존관리조치 제27조 (제품 라벨링 요건)에 맞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NAFO 보존관리조치 제27조 (제품 라벨링 요건)는 규정 수역에서 어획 후 가공된 모든 어종은 각 어종 및 제품 분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12년 4월 ○○호에 탑승한 모잠비크 조사관은 ○○호가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ICCAT 권고안 03-12를 위반, 라이베리아 수역에서 무허가 조업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해당 어선의 선장은 ICCAT 항구

조사 방식에 대한 권고안 97-10을 위반하여 조사관의 조사에 비협조 하였다. ICCAT 권고안 97-10의 내용을 보면 항구조사는 ICCAT 체약국의 항구에서 체약국 조사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조사관은 ICCAT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획물, 어구장비, 어업일지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선장은 조사관에게 협조해야 하며 조사는 선박 피해 및 어획물 품질 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폴 조사관은 3명의 스페인 선원이 자국민 또는 자국 관할권 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IUU 어업 가담에 대한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CCAMLR 보존조치 10-08을 위반하고 CCAMLR NCP (비체약 당사자, Non Contracting Party)-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온두라스 선박에 승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제 협약 등을 통하여 해당 선원을 조사하고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NMFS는 스페인 어선이 IATTC, NAFO 보존관리조치에 위반하는 IUU 어업을 했다는 이유로 IUU어업 가담국가로 지정하였다.

8) 탄자니아

NMFS는 2012년부터 지속된 탄자니아 어선 4척의 IUU 어업활동으로 2013년에 탄자니아를 IUU 가담국가로 지정하였다. 특히, ○○호 등 어선 3척은 2003년, 2004년, 2008년 CCAMLR 금지수역에서의 조업활동으로 NCP IUU 선박리스트에 등재되었으며, 이후 선명을 변경하여 IUU 어업을 계속하였다. 2012년에는 금지수역인 CCAMLR 58.4.1 수역 및 호주 북서부의 크리스마스섬 부근에서 조업하였다.

운반선 ○○호는 2012년 4월 금지수역인 크리스마스섬 인근 수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조사결과, IUU 어업 중이던 다른 어선과 해상전재 내역이

확인되어 비체약 당사자 선박을 파악, 선박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CCAMLR 보존조치 10-07 위반으로 CCAMLR IUU 선박리스트에 등록되었다.

9) 베네수엘라

2009년 베네수엘라 국적 ○○호 등 선망선 2척이 IATTC 보존관리조치 C-09-01 위반에 대해 제재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2011년에 IUU어업 가담국가로 지정되었다.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는 선망선 1척에 대해서 7,500\$의 벌금, 6개월 어업정지, 선장의 교육훈련 참석을 부과하였으며, 다른 1척에 대해서는 금지수역 내에서 단순 이동으로 경고 조치하였다.

2012년 10월 NMFS는 베네수엘라 정부에 IUU 가담국가 지정해제에 대한 긍정적인 공문을 전달하였으나, '11년~'12년 발생한 베네수엘라 어선의 IUU 어업으로 2013년 IUU 가담국가로 재지정하였다.

○○호 등 어선 2척은 IATTC 보존관리조치 C-05-03을 위반하여 상어 지느러미를 절단한 후 몸통을 선상폐기 하였으며, ○○호 등 3척은 IATTC 보존관리조치 C-04-05를 위반, 폐기물 해상투기 및 혼획된 바다거북을 미방류하였다. 또한 ○○호 등 3척은 IATTC 보존관리조치 C-11-01을 위반, 6차례에 걸쳐 다랑어 25톤을 선상 폐기하였다.

10) 니카라과

니카라과 국적의 어선 1척은 2013년 바다거북 혼획 방지를 위한 IATTC 보존관리조치 C-04-05를 위반, 혼획된 바다거북을 방생하지 않았고, 선망어선 4척은 IATTC 보존관리조치 C-12-01를 위반하여 다랑어를 선상 폐기하였으며, 기타 어선 1척은 '13년 8월 및 9월 IATTC 보존관리조치 C-11-03 (데이터 부이 근처 조업 금지에 관한 결의)을 위반

하여 금지수역을 침범하였다.

이에 따라, NMFS는 2014년 10월 니카라과에 IUU어업에 대한 확인 공문을 보냈으나, 니카라과에서 4척의 혐의어선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답하였을 뿐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2015년 니카라과를 IUU 가담국가로 지정하였다.

11) 포르투갈

NMFS는 2013년, 2014년 포르투갈 국적 어선 ○○호 등 3척이 NAFO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여 조업한 선사에 대해 제재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사유로 2015년에 포르투갈을 IUU 어업 가담국가로 지정하였다.

IUU 어업국 지정관련 불법어업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4월 포르투갈 어선 ○○호는 스페인 항구조사에서 각 어선은 어획량, 전채, 양륙항 등을 각 국 FMC에 보고하는 NAFO 보존관리조치 제28조 (어획물 모니터링), 중대한 위반 관련 추가 절차 제38조, 제품 라벨링 요건 제27조를 위반하고 어획량 허위 보고, 제품 라벨링 미부착, 봉인을 뜯거나 조작한 것이 적발되었다. 2014년 4월 ○○호는 어획물 모니터링을 위한 각 어선의 조업일지, 생산일지, 보관계획서 작성 및 보고에 관한 NAFO 보존관리조치 제28조를 위반하고, 조업일지와 생산일지를 허위 기록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호에서는 어종별 최대 망목크기를 규정하는 NAFO 보존관리조치 제13조 (어구 규정)를 위반하고 저서어종 조업에 130mm 보다 작은 망목의 어망을 사용하였다.

제13조 어구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각 어종에 적용되는 다음의 망목 크기보다 작은 망목으로 이루어진 어망으로 해당 어종을 어획할 수 없다.

Table 2-4. Regulation of mesh size for target species

Fish species	Mesh size
Shrimp	40mm
Squid	60mm
Skate	280mm
Other demersal species	130mm
Red fish(Subarea 2, 1F, 3K)	100mm
Red fish(3O, 3M, 3LN)	90mm

12) 나이지리아

2006년 CCAMLR 협약수역 내 조업으로 CCAMLR NCP-IUU 선박리스트에 등재된 나이지리아 어선 ○○호는 2013년 CCAMLR 협약수역 58.4.3b (‘13.2.13), 58.6 (‘13.8.13) 및 기타 협약지역에서 8회 조업하였다. 2014년 4월에는 상기어선 등 2척의 어선에서 불법어획물로 의심되는 100~150톤의 어획물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호주는 이 어선의 오랜 IUU 어업에 주목하였으며, 인터폴은 뉴질랜드 요청으로 2013년 12월 자주색 수배서 (Purple Notice, 새로운 범죄수법이 발견되었을 때, 범죄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안내·배포)를 발행하였다. 2014년 나이지리아 어선 1척은 자망을 금하는 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하고 48.6해구에서 자망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 어선 또한 노르웨이의 요청으로 '13년 9월 자주색 수배서를 발행받았다.

NMFS는 2014년 10월 나이지리아 정부에 IUU 혐의 어선 4척에 대한 확인공문을 보냈고, 나이지리아는 1척을 제외한 3척은 나이지리아의

등록어선이나 어업허가권을 발행하지 않았음을 회신하였으나, 미국은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IUU 어업 가담국가로 지정하였다.

2. EU 지정현황 및 사례

가. 지정배경

EU (유럽연합, European Union)는 다음 각각의 행위를 IUU 어업행위로 간주한다. ① 유효한 어업라이센스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② 어획량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③ 폐쇄된 지역에서 어획한 경우 ④ 어선의 인식을 곤란하게 한 경우 ⑤ 조사관 (inspector)의 조사행위를 방해한 경우 ⑥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거나 금지어종을 어획한 경우 ⑦ IUU 어선리스트에 속한 어선과 조업행위에 참여한 경우 ⑧ 허용되는 크기 이하의 어류를 전제, 양륙하는 행위 ⑨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관할지역에서 그 기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조업행위를 하는 경우 ⑩ 무국적어선인 경우 등이다.

2012년 11월 EU는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 피지, 파나마, 스리랑카, 바누아투, 토고 8개국, 2013년 11월 한국, 가나, 퀴라소 3국을 IUU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으며, 불법어업의 의한 예비 IUU 어업국 국가별 지정사례는 아래와 같다.

나. 지정현황

1) 가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가나의 선망어선은 전제프로그램에 관한

ICCAT 권고안중 12-06을 위반, ICCAT 수역 내에서 해상전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2012년 10월 1일 이전까지 가나 당국은 ICCAT 권고안 03-14를 위반하여 ICCAT 지역에서 조업 중인 참치어선의 위치보고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며, 당국 어선은 토고, 베냉,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EEZ 내에서 승인 없이 조업하였다. 몇 년 동안 ICCAT 수역에서 조업 중인 가나 선단은 ICCAT이 부과한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준수하지 않았고, 가나 정부는 눈다랑어 남획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가나 당국은 UNCLOS (유엔해양법협약,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94조 (기국의 의무) 따라 자국 기선과 선장, 해기사 및 선원에 대해 관할권 및 관리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의 등록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NAFO (북대서양수산위원회), SEAFO(남동대서양수산기구, South Ea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NEAFC (북동부 대서양 수산위원회, North East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에 불법어선으로 등재된 어선이 가나 선박임에도 자국 선박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았으며, 가나 당국의 등록어선 수가 327척이라고 신고했으나 EU 위원회가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 유효한 어업면허를 보유한 가나 선박 수는 117척이었다. 또한 자국 선박이 불법어업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불법 어획물의 반입을 막지 못하는 등 국제법 하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타 국가와의 협력 면에서도 각 국가가 불법어업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등 직접적으로 불법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조율하고 협력하도록 권고하는 IPOA (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IUU 28번 권고안 (국가간 협력)을 따르지 않았다.

2) 퀴라소

'11년 퀴라소 어선이 SPRFMO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내 공해상 어업 자원보존관리협약 관할 지역에서 대형 표층유자망 (large-scale pelagic driftnets) 및 모든 심층자망 (deepwater gillnets)의 사용을 금지하는 SPRFMO의 보존관리조치 1.02를 위반, 심해자망을 사용해 저서성 상어류를 포획했으며, 퀴라소 정부는 해당 선박의 어획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선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SPRFMO 협약 조업구역 내 자망어업을 중단하기 위한 사전예방 조치도 취하였지만 해당 선박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U는 IUU 어업의 통제와 제재조치가 불충분하고 어선의 전재, 양륙, 이동, 수출 등 어업활동에 대한 감시체계 부족, 조업감시센터의 부재, 인적자원 부족, 일일기준으로 선박이 전송하는 자료의 정확성 검증 부족, 구체적인 검증절차 부재, 관계자를 위한 지침 또는 절차매뉴얼 세부검증 부재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퀴라소는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제도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프로그램의 ICCAT 권고안 09-11을 위반하여 현장에서 정보를 실제 검증·확인하지 않고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문제로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

아래는 EU가 IUU 최종 어업국과, 예비 어업국 지정 및 해제의 시기와 국별 사유들을 나열하였다.

2014년 3월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 3개국을 IUU 최종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벨리즈의 지정 사유는 적정한 법 체제 및 시스템 등의 부재, 보존관리조치 및 국제법 미이행 등이며, 캄보디아는 유엔해양법협약 91조 (선박의 국적), 94조 (기국의 의무) 미이행, 기니는 유엔해양법협약 61조 (생물자원의 보존), 62조 (생물자원의 이용), 94조 및 공해어업협정 18조

(기국의 의무-어선등록증 발급 및 조업허가, 어선의 국적등록부 설치, 어선 및 어구의 표시, 조업보고 및 어획량 확인, 전채규정 등), 19조 (조사, 위반에 대한 처벌), 20조 (집행의 국제적 협력) 미이행 등이다.

2014년 6월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2개국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 부족으로 IUU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스리랑카는 2012년 11월에 확인된 수산 관련 국제법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 미준수, 통제수단 부족 등의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2014년 10월 IUU 최종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파지, 파나마, 토고, 바누아투, 벨리즈는 불법조업 방지에 성공적 해답을 제시해 지정 해제되었다.

2014년 12월 솔로몬 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투발루 4국을 IUU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솔로몬 제도는 수산물 인증시스템 부족, 세인트키츠네비스는 자국 선박에 대한 어업활동 감시, 통제시스템 부족,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은 자국 선박에 대한 어업활동 감시, 통제시스템 부족, 투발루는 투발루 연근해 어업활동에 대한 감시, 통제시스템 부족 등의 사유로 IUU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2015년 4월 한국과 필리핀을 IUU 예비 비협력국에서 지정 해제하였다. 한국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제재조치 강화, 조업감시센터 설립, 항구 검색 제도 수립 등 IUU 어업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정 해제되었다.

2015년 10월 대만 및 코모로를 IUU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대만의 지정 사유는 시스템 및 법률 체계 부재,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각종 의무 불이행 등이었으며, 코모로는 자국선 등록 및 관리 의무를 해외 민간 기업에게 위임한 것과 감시 시스템 부실이었다.

수산 관리 시스템 및 법·정책을 강력하게 개정한 가나와 파푸아뉴기니는 예비 비협력국의 지정에서 해제되었다.

Table 2-5. Current list of states identified by EU as non-cooperating IUU countries

No.	Date	Pre-identified Country	Identified Country	Others
1	Nov 15 2012	Belize, Fiji, Cambodia, Guinea, Panama, Togo, Sri Lanka, Vanuatu		European Commission
2	Nov 26 2013	Rep. Korea, Ghana, Curacao	Belize, Cambodia, Guinea	European Commission, EU Council
3	Mar 24 2014	–	Belize, Cambodia, Guinea	EU Council
4	Jun 10 2014	Philippines, PNG	–	European Commission
5	Jul 23 2014	Rep. Korea, Curacao, Ghana,	–	European Commission
6	Oct 14 2014	–	Sri Lanka	EU Council
7	Dec 12 2014	Solomon Islands, Tuvalu, St. Kitts-Nevis,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European Commission
8	Oct 2015	Taiwan, Comoros	–	European Commission

3. 우리나라의 지정배경 및 사례

가. 우리나라 IUU 실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straddling fish stocks) 및 고도회유성어족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보존과 관리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이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공해어업협정 (The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UNFSA)이 2008년에 발효된 우리나라는 FAO 이행협정의 협정국으로 관련 협정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Greenpeace, 2013). 그 뿐 아니라 전 세계 50개 지역수산기구 중 18개에 가입해 있고, 가입을 추진중인 기구는 3개인데 (2016.12월 기준), IUU 어업을 예방·방지·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IPOA-IUU)을 지지하였다.

또한,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FTA (자유무역협정, Freight Transport Association)에 따르면 한국과 유럽연합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실제적으로 이행’, ‘공명정대하게 활동하여 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 및 보존’, ‘민간 분야 및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투명성을 보장’, ‘노동과 환경 관련 법규 및 정책을 개선하고 강화’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 아프리카

2014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연안국 입어 허가증을 취득하여 조업하는 서아프리카 나라는 가나, 토고, 가봉, 앙골라 등에도 입

어 허가증을 취득하여 조업하였지만, 2015년 이후부터 감척 등으로 완전히 철수하고 현재는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3개국이고, 동아프리카에서는 모잠비크, 소말리아 등이다.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수척이 불법어업을 행한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5개 업체의 약 30여척의 선박이다. 최근 참치 선망선이 라이베리아 수역에서 위조된 어업허가권으로 불법어업을 하고 관련 혐의를 무마하고자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국제적 물의를 빚었다. 또 같은 회사인 선박도 불법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아프리카의 다른 선박들도 이 수역에서 위조어업권으로 불법어업을 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그 회사는 자신들은 잘못된 것이 없으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서부 아프리카의 무더기 불법어업 사태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이곳에서 잡힌 불법 어획물의 반입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인도양 연안국들은 일치단결하여 그 선박에 대해 어업허가 및 항만 입항을 거부하였다.

서아프리카에서 IUU 유형을 살펴보면 연안국 EEZ 침범 조업, 연안국 경계선 침범 조업(12마일 내측), IEZ 내측 불법조업, 허위 입어허가증 발급 불법조업(무허가 조업), 어구 위반(내장망 사용 등 제한조건 위반), 무허가 불법 전채, 카누이용 불법조업 등으로 분석된다 (박민규, 2016).

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IUU 실태

주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남극수역에서 이빨고기 조업수역은 FAO 48, 58, 88 (로스해, 웨들해)해구 등이며, 크릴 조업 수역은 FAO

48해구와 사우스조지아 섬 (영국령) 부근이다.

우리나라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의 25개 회원국 중 하나이다. 이 협약은 과거 남극해 남획과 자원 붕괴에 대한 반성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남극해 어업활동을 엄격히 관리하는 보존기구이다.

2011년 당시 문제가 된 선박은 남극의 로스해에서 이빨고기를 제한량의 4배 가까이 남획하였다. 명백한 불법어업이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불법 조업선을 IUU 선박 지정을 의제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만장일치 제도를 이용해 모든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당 선박의 IUU 등재를 반대하였다. 매우 심각한 불법어업임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해당 업체를 적절히 처분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관계부처는 이에 대해 과태료 150 만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회원국들의 시각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2013년 1월 11일 미국 상무부는 의회에 2년마다 제출하는 불법어업 (IUU) 국가 보고서에 한국을 포함시켰다고 한국에 통보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나, 이탈리아,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탄자니아, 베네수엘라와 함께 IUU 국가로 낙인 찍혔다. 결국 한 업체를 옹호하다 대한민국 전체가 IUU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CCAMLR 수역에서 IUU 유형을 살펴보면 High CPUE (단위노력당 어획량, 일종의 어업효율치), 과학 목적의 시험조업인 이빨고기의 자원량과 생태자료 정보 수집을 위한 이빨고기 표지방류 (Tagging) 의 무 위반, 어획량 허위보고, 해양 쓰레기투기 등으로 분석된다.

나.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IUU 어업 주요사례

1) 어획물 및 어획물 찌꺼기 해상투기 사례는 CCAMLR 수역에서 조업중인 '13/'14어기에 ○○○호에 탑승했던 옹서버는 해당 어선의 선원들이 제품, 어분 생산 후 남은 어획물찌꺼기를 해상에 투기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고 진술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CCAMLR 보존조치 26-01 제6항에는 남위 60도 이남 수역에서는 어획물 찌꺼기 해상투기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해상 투기를 하였으며, 또한 조업실적 보고 시 폐기량도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미보고하여 지적을 받았다. 원양산업발전법[시행 2014.1.31.] [법률 제11982호, 2013.7.30., 일부개정]의 관련 처벌조항을 살펴보면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제2항 및 제33조(벌칙)에 해당되어 정부의 조치사항은 CCAMLR수역에서 2개월('15/'16어기) 입어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제11호) '15.10에 부산경찰청에 「원양산업발전법」 위반혐의로 수사의뢰를 하였다.

2) 높은 단위노력당 어획량 (High CPUE)의 사례는 CCAMLR 수역에서 ○○○호 등 3척은 '08년~'11년 기간 조업 중 같은 수역 내 다른 어선들보다 높은 CPUE (단위노력당어획량, Catch Per Unit Effort)를 보여, CCAMLR 및 회원국은 '08/'11어기 3년 동안 한국어선의 CPUE가 다른 나라 선박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음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다루었다. 관련 근거로는 원양산업발전법[시행 2014.1.31.] [법률 제11982호, 2013.7.30., 일부개정],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제2항, 원양산업발전법 제33조(벌칙), 제36조(과태료)에 해당된다. 조치내용 원양어업허가 취소 및 해기사 면허정지 30일(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과태료 150만원 부과(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과태

료) 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3년도에 미국에서 동 선박의 IUU어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제재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였다.

3) 어획량 허위보고의 사례는 CCAMLR 수역에서 ○○호는 2013.12.20~2014.1.23일 기간 중 이빨고기 221톤(몸통 기준)에 대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252톤을 하역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은 초과어획으로 '13/'14어기 보고한 이빨고기 어획실적과 실제 양륙량 간 약 31톤 차이가 발생하였다. 원양산업발전법[시행 2014.1.31.] [법률 제11982호, 2013.7.30., 일부개정] 관련근거로는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제2항, 제33조(벌칙), 제36조(과태료) 처분과 원양어업허가 정지(30일), 해기사 면허정지(30일), 입어추천 제한(3년)(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과태료 150만원(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과태료) 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이 부과되었다. '16. 2월 상기 원양선사(○○실업)는 CCAMLR 수역에서 3년간 입어추천제한 행정조치에 대해 사법부에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4) 조업금지 수역 내 조업의 사례는 ○○○호는 서부아프리카 기니 관할 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 중 조업금지 수역에서 조업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기니 관할 수역의 수심 20m 이하 수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조업감시센터에서 전자해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정기간 동안 수심평균 10m 수역에서 조업한 항적이 발견되었다. 원양산업발전법 관련근거로는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제2항제2호, 제33조(벌칙)이며, 조치내용으로는 원양어업허가 정지(30일) 및

해기사 면허정지(30일)(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제36조(과태료)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3. 11월 EU는 동 수역의 한국 저층트롤선들의 EEZ 침범조업 등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였다 (2015년도에 문제선박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감척사업 추진하였다).

5)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조업 위반** 사례는 ○○호는 시에라리온 수역에서 EEZ 침범 및 옴서버 미승선 등 무허가 조업 등이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에라리온 수역에서 EEZ 입어 미신고, 옴서버 미승선, 선박자동식별장치 (Auto Identification System, AIS) 고의 미작동 등 무허가 조업을 실시하였다. 원양산업발전법 관련근거로는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제2항제1호, 제33조(벌칙)제1항이며, 조치내용으로는 원양어업허가 정지 100일 및 해기사 면허정지 100일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과 과태료 100만원 부과(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과태료)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이다.

6) **옴서버 언어폭력**의 사례는 ○○○호의 승선원들은 '14.5월~'14.6월 ICCAT 관할수역에서 조업 중 동승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국제옴서버에게 임무수행 방해와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 주요 지적 내용으로는 옴서버의 이동, 승선·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해당 어선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옴서버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하였다. 원양산업발전법 관련근거로는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제2항제10호, 제33조(벌칙)제1항이 해당되며, 조치내용으로는 원양어업허가 정지 60일 및 해기사 면허정지 60

일(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과 과태료 150만원
(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과태료) 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이
부과되었다. 해당 원양선사(○○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회수, 동 수역의
조업쿼터 몰수 등의 병행조치를 실시하였다.



Table 2-1. IUU case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imposed to Korean distant water fishing vessels (March 2014)

Year	Operator	Number of vessels	Details on its illegal activities and imposed administrative sanctions
2011	A Company	1	○ Deployed additional fishing gear after exceeding 40 tons of TAC and gained unlawful benefit of USD 710,000 from illegal activity ○ Administrative fine of KRW 1.5m with 30 day suspension of fishing license and officer's license (voluntary 1 year discontinuity of fishing activity)
2012	B Company	1	○ Illegal transshipment activity within EEZ of Guinea Bissau in March 2011. ○ Administrative fine of KRW 1m with 15 day suspension of fishing license and 30 day suspension of officer's license
		1	○ Unauthorized fishing activity from the Sierra Leone authorities within a closed area in October 2011 ○ Administrative fine of KRW 1m with 15 day suspension of fishing license and 30 day suspension of officer's license
	C Company	5	○ Illegal transshipment activity within EEZ of Guinea Bissau in March 2011. ○ Administrative fine of KRW 1m with 15 day suspension of fishing license and 30 day suspension of officer's license

2012	D Company	2	○ Illegal transshipment activity within EEZ of Guinea Bissau in March 2011. ○ Administrative fine of KRW 1m with 30 day suspension of fishing license and 30 day suspension of officer's license
			○ Illegal transshipment activity within EEZ of Guinea Bissau in March 2011. ○ Administrative fine of KRW 1m with 30 day suspension of officer's license
	E Company	1	○ Illegal transshipment activity within EEZ of Guinea Bissau in March 2011 ○ Administrative fine of KRW 1m with 30 day suspension of fishing license and 30 day suspension of officer's license
	F Company	1	○ Illegal transshipment activity within EEZ of Guinea Bissau in March 2011 ○ Administrative fine of KRW 1m with 15 day suspension of fishing license and 30 day suspension of officer's license
	G Company	1	○ Used prohibited fishing gear in a closed area within EEZ of Guinea Bissau in Aug 2010
		1	○ Illegal transshipment activity within EEZ of Guinea Bissau in March 2011 ○ Administrative fine of KRW 1m with 15 day suspension of fishing license and 30 day suspension of officer's license

2013	H Company	1	○ Exceeded allocated quota in SPRFMO Area in March 2012 and unlawful benefit of KRW 2 billion from 2,219 tons of excessive quota (before SPRFMO was officially launched) ○ Administrative fine of KRW 1m with 30 day suspension of fishing license and 30 day suspension of officer's license
	I Company	1	○ Unlicensed illegal fishing activity within EEZ of Liberia from 2011 to 2012. ○ Administrative fine of KRW 15 million with 60 day suspension of officer's license
	J Company	1	○ Unlicensed illegal fishing activity within the EEZ of Falkland Islands ○ Administrative fine of KRW 1 million with 30 day suspension of officer's license
2014	K Company	1	○ Illegal fishing activity in Sierra Leone areas in September 2013 ○ Administrative fine of KRW 1 million with 30 day suspension of officer's license
	L Company	1	○ Illegal fishing activity in Sierra Leone areas on 17 Jan 2014 ○ Illegal transshipment activity in Sierra Leone areas in Sep 2013 ○ Administrative fine of KRW 1m with 100 day business closure and 100 day suspension of officer's license

2014	L Company	1	○ Illegal fishing activity in Sierra Leone areas on 17 Jan 2014 ○ Illegal transshipment activity in Sierra Leone areas in Sep 2013 ○ Administrative fine of KRW 1m with 100 day business closure and 100 day suspension of officer's license
------	-----------	---	--

Sour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다. 지정배경

1) 미국

미 상무부의 '13년 보고서에는 '11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협약수역 내에서 우리어선이 배정받았던 어획한계량 (TAC)보다 35.5톤을 초과 어획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미화 71만 달러에 달했으나, 우리 정부가 부과한 벌금은 미화 1,300달러와 30일간 원양어업허가 정지 및 30일간 선장 면허정지에 불과하며, 해당 어선의 CCAMLR의 IUU 선박 리스트 등재 반대, 개정절차 중인 원양산업발전법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인상폭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면서, IUU어선에 부과되는 최소한의 제재 조치 등 한국이 자국 어선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미 상무부 보고서' 저자명, 2013). 미국 국립해양수산청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을 IUU 예비 어업국

으로 지정하면서 2년 이내에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의 합리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하였다 (NMFS, 2013).

2) EU

2013년 11월 26일 EU는 서부 아프리카 수역에서 일부 우리 어선들의 불법조업 관행과 이에 대한 정부의 처벌수준 미흡, 미국의 IUU 어업 가담국가 지정 이후 즉각적인 어선위치추적장치 (VMS, Vessel Monitoring System) 설치 의무화 및 조업감시센터 가동 미이행 등을 이유로 가나, 쿼소와 함께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였다 (해양수산부, 2016).

EU 위원회는 2011년, 2012년 우리 어선이 서아프리카 국가의 해당 조업구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보존관리조치에 반해, 유효한 면허·승인·허가 없이 어획활동 실시, 금어구역 또는 금어기 조업, 위조 또는 무효한 문서 사용, 연안국 관계자의 업무수행 방해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조업감시센터 부재, VMS 일부 미설치(344척 중 97척 미설치), 낮은 제재조치 등의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해당 조치사항들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기 확보했고,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EU와 지속적인 협의 및 설명을 했음을 밝혔으나, 시행 시기의 차이를 이유로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 예비 IUU어업국 지정은 경제적·행정적 제재와 무관한 사전 절차로서, 지정사유가 개선되지 않아 최종 비협력국으로 지정될 경우, EU에 수산물 수출이 약 5.6억불에 상당하는 수출이 금지 (직접수출액 3억불+태국·베트남 등으로 가공용으로 수출되는 간접수출액 2.6억불) 되며 EU의 28개국 향만 접안 권한 말소, 수산물 금수조치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른다.

제3장 IUU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현황 및 개정방향

원양산업발전법은 2008년에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IUU 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자원보존조치 강화에 따른 국내의 입법적으로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되었는데, 부분적인 개정으로는 현재 해양생물자원 보전과 관리 등 국제적인 동향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2013년 미국과 EU로부터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2차례에 걸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다.

제1절 원양산업발전법의 제·개정 현황

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 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8년 2월에 「수산업법」과는 별도로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부록 1을 참조한다.

2010년 3월에는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개정되었다.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2014년 1월에는 과태료 처벌 규정 강화, 준수사항 위반 시 재정적 지원 제한, 국내항 입항 선박의 항만국 검색 강화, 어선위치추적 장치의 설치의무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도록 개정되었다.

2015년 7월에는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17년 4월에는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도록 일부 개정되었다.

제2절 IUU 관련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 방향

본 절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의 제·개정 사항을 기반으로 IUU 어업과 관련하여 향후 개정이 필요한 조문들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1. 중대한 위반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개정 2013. 7.30., 2015. 1.6)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서는 EU의 IUU 통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정도, 가치, 위반 범위 또는 반복 여부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도 동사항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을 세분화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

상기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제33조 벌칙 규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을 한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원양어업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조문이다. 업계에서는 제13조 제2항이 개정 당시 정부의 상황이 긴박하여 예비 IUU 어업국의 탈피를 최우선 순위로 규제부터 강화하자는 식의 법 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대만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의 벌칙규정을 인

용하여 원양어업법을 개정할 바가 있다. 대만의 원양어업법 제35조(벌칙)를 살펴보면 다음 2가지 사항 중 하나를 위반한 자는 3년 미만의 구금, 혹은 그에 대신하거나 추가하여 600만 NTD (한화 약 2억2천4백만원 상당) 이상 3천만 NTD (한화 약 11억2천만원 상당)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 번째로는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질렀을 경우 지정항구로의 입항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어업면허가 취소된 어선이나, 어업면허가 정지되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어선을 항구 밖으로 운항하면서, 당국이 지정한 시간 내에 지정 항구로 항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대만의 원양어업법의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EU의 IUU 통제법의 벌칙규정을 참조하여 제정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아래에 나타난다.

대만의 원양어업법 제36조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원양 어업자나 원양어업자의 직원이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원양어업자를 다음의 조항에 따라 벌금에 처하며, 또한 어업허가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 ① 500GT 이상의 어선 : 600만 NTD 이상 3천만 NTD 이하의 벌금
- ② 100GT 이상 500GT 미만의 어선 : 400만 NTD 이상 2천만 NTD 이하의 벌금
- ③ 50GT 이상 100GT 미만의 어선 : 200만 NTD 이상 1천만 NTD 이하의 벌금
- ④ 50GT 미만의 어선 : 100만 NTD 이상 500만 NTD 이하의 벌금

상기 규정을 참조하면 우리나라도 벌금 규정의 세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즉각적인 조치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9항, 신설 2016. 1.6.)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된 원양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① 조업활동의 즉시 중단, ② 지정된 항구로 입항, ③ 어획물에 대한 양륙 및 전재 금지이다. 이 조항은 EU의 IUU 통제법 제43조 (Article 43 Immediate enforcement measures)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도 조업활동을 중단하고, 조사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된 항구로 입항해야 하고, 어획물에 대한 양륙 및 전재를 금지하고 있다. EU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개시 (start a full investigation of the infringement)하고 국내법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심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조사나 위반행위 확인 없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인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위 법령에 조사 절차와 행정조치 절차 그리고 조치내용과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에서는 통상적으로 연안에서 하루나 이틀정도 거리에서 조업을 하므로 조사를 위한 지정항구에 입항도 쉽고 조사를 위한 조사관들의 이동도 용이하다. 하지만, 한국 원양어선의 경우 대부분 하루나 이틀 만에 연안국의 지정항구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한국에서 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을 해외로 파견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의 연안에서 IUU 어업이 발생 했을 경우는 어업단속공무원이 IUU어업의 현장을 목격하면 현행범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들을 볼 때 원양어선이 불법을 하였더라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면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위성을 이용한 전자적 조업감시센터에 보고하는 전자 조업보고시스템 (Electronic Reporting System, ERS)을 이용한 단순한 보고 실수는 조업감시센터 (FMC)나 국립수산물과학원으로 수정요청을 하면 보완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조업 중 보존관리조치 위반 (어구, 금지어종 등) 시 선박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조업감시센터에서는 인지 할 방법이 없다.

대만의 원양어업법 제18조 (IUU 의심)에서는 ① 어선이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당국은 해당 어선에 대하여 어업을 중단하고, 추가 검사를 위하여 요구한 기한 내에 지정항구로 항행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어선의 항행, 입항, 검사 및 기타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관련된 원양산업자가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된 원양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는 단순한 의심행위가 발견되어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중대한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명시하고 있다.

**<Table 3-1> Table 4-1 Amended penalty provisions in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in 2015**

No	Amended on July 30 2013	Amended on July 1 2015
	13-2. No distant water fishery operator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in international waters:	13-2. No operator, etc. of a distant water fisheries business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related to serious violations in overseas waters:
1	Fishing without valid permission,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Conducting fishing operations without any valid licence, authorization or permit, or registration issued by the state of flag or the relevant coastal state;
2	Fishing in a closed area or during a closed period or conducting fishing operations for species, capturing or harvesting of which is prohibited;	Failing to maintain such the amount of catch and detailed records thereof (including the data transmitted from fishing vessels monitoring system) as demanded by an international fisheries organization, or of falsely reporting such allowable amount of catch;
3	Capturing or harvesting and storing, trans-shipping, or unloading of fish smaller than the permitted size	Conducting fisheries operations in any marine preserve established by an international fisheries organization or any coastal state, conducting fisheries operations during a prohibitive period of fisheries, or conducting fisheries operations without being allocated a catch quota or in excess of the catch quota;

4	Fishing without an allocated fishing quota in an area for which fishing quotas have been allocated or fishing in excess of the allocated fishing quota	Directly conducting fisheries operations for any resources, the fisheries operations of which are tentatively or permanently prohibited
5	Fishing with prohibited or unauthorized fishing gear	Fishing with prohibited or unauthorized fishing gear
6	Fishing in violation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f an RFMO in the areas under the purview of such RFMO	Forging or concealing a fishing vessel's unique marking/identifier and registered matters
7	Engaging in transshipment of fish or in a joint fishing operation with a vessel listed by internat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as one engaged in illegal, unreported, or unregulated, or unreported fishing or assisting such vessel	Concealing, damaging, or removing any evidence related to inspections onboard a vessel;
8	Concealing or modifying a vessel's unique marking/identifier or inspection information;	Fisheries in violation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f an RFMO in the areas under the purview of such RFMO

9	Interfering with an international observer's performance of duties, such as travel, embarkation, disembarkation and inspections;	Transshipping fish or a joint fishing operation, with a vessel listed by any international fisheries organization engaged in illegal, unreported, or unregulated fishing or assisting such vessel
10	Interfering with embarkation, disembarkation, vessel inspections, or communications of port state control inspectors or high-seas on-board inspectors	Interrupting the duty performance of an observer, such as the movement, embarking, disembarking and inspection
11	Forging a statistical document or failing to submit statistical documents	Interrupting the embarking, disembarking, ship inspection, and communications of an inspector of the Port State or on board or violate any measure following an inspection by the Port State;
12	Other illegal, unreported, or unregulated fishing other than those enumerat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11	Failing to install a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or intentionally not operating the installed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Reference: Page 21, *Study on penalty provisions of DWFD Act* by Dr. Park Minkyu, Inha University, published in Sep 2016

3. 전재허가 (변경) 제도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 개정 2015.1.6)

전재(轉載)란 한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제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 운반선 및 지원선 등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정의)17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 전재 작업 시작 24시간 (해당 전재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전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장 또는 선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재 허가신청서 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재변경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전재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에게 전재 허가증 또는 전재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먼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원양선망의 예를 들어 보자. 선망은 조업 특성상 1회 조업으로 적게는 몇 십톤 어획을 하지만 많게는 몇 백톤까지 어획이 가능한 어선이다.

통상적으로 조업지 (1982년 체결된 나우루협정당사국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 제도, 나우루, 팔라우, PNG, 솔로몬 군도, 투발루), PNA)가 연안국에서 6시간~12시간 정도의 거리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며칠간 조업을 하던 중 1회 조업으로 전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재하기 위해서 신고 (보고)를 하고 입항하면서 운반선을 수배하고 전재 스케줄을 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24시간 이전 전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 때문에 입항하여 전재 시간을 맞추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 조업선의 작업 손실을 감내해야만 한다.

또한 북위 10도~20도 이북 공해수역에서 참치, 연어, 명태 등을 제외한 모든 어종을 관리하는 북태평양의 수산위원회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NPFC) 수역에서 조업 중인 원양꽂치붕수망의 사례는 조금 다른데, 수역의 특성상 부근을 지나가는 운반선을 수배하여 전재를 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전재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기상 등의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수역이기도 하다. 또한 전재 도중에 기상이 나빠지면 운반선과 조업선이 이선 (離船)하여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다 다시 전재 (轉載)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전 세계 해양에서 유일하게 지역수산기구가 형성되지 않은 곳으로 아르헨티나 EEZ 외측 공해어장인 FAO 41해구로 주 어종인 오징어를 대상으로 조업 중인 원양트롤과 원양오징어채낚기 어업이다. 이곳 역시 운반선 수배에서부터 전재 (轉載)까지의 변수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어장 특성상 운반선이 자주 배치되는 곳이 아

니고, 어황의 변수가 운반선의 투입을 좌우하는데 어황이 꾸준하게 어획이 되면 운반선을 일정하게 투입하겠지만, 오징어라는 어종은 어황이 좋으면 많이 잡혔다가 어황이 나쁘면 한동안 잡히지 않는 어종으로 운반선 투입이나 배치를 어렵게 하는 어종이다. 어황이 좋으면 운반선을 많이 투입하겠지만, 어황이 나빠 운반선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오징어 어황이 좋아 운반선을 급하게 투입하려고 수배하면, 어떤 때는 운반선이 어장에 빨리 도착하지 않아 조업선은 만선이 되어 어창 공간 부족으로 전채를 위해 운반선을 기다리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떤 경우는 운반선이 출발해야 하는데 운반선 어창에 화물(어획물 등)이 채워지지 않아 조업선 측에 급하게 전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갑자기 전채 스케줄을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24시간 사전 전채허가 제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4. 어종별 10% 규정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2항, 신설 2015.7.7)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어종별 10%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을 살펴보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조업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어획량과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양륙량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보고한 전재량의 차이는 어종별 어획량의 **1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제25조의3 (전재량 보고) 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전제한 경우에는 전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전제가 완료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전재량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제 허가를 받은 전제량과의 차이가 **어종별로 1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7.7.]

EU의 IUU 통제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REGULATION(CE) No 1224/2009 of 20 November 2009, TITLE VI (CONTROL OF FISHERIES) CHAPTER 1(Control of the use of fishing opportunities) Section 1(General provisions) Article 14(Completion and submission of the fishing logbook) The permitted margin of tolerance in estimates recorded in the fishing logbook if the quantities in kilograms of fish retained on board shall be **10% for all species**.

EU IUU 통제법 1224/2009(2009년11월 20일) 제14조(조업일지 (fishing logbook) 작성 및 제출) 3항 조업일지에 기록된 선상 보관 어류의 중량(kg)의 허용오차는 **모든 어종의 10%**이어야 한다.

원양산업발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어획량과 전제량, 양륙량의 차이가

어종별 10% 이상 차이가 발생할 때는 IUU어업으로 중대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에 포함되어 원양산업발전법 벌칙조항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조항도 EU의 IUU 통제법의 조문 (허용오차는 모든 어종의 10%)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어종별 10%로 바뀌어 법이 제정된 것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U의 나라들은 연·근해어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연안 부근에서 조업을 하여 하루나 이틀, 많게는 3일 정도 조업을 하고 입항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어떤가? 계속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뱃짐을 어느 정도 채워야 운반선을 수배하여 전재를 한다. 그런데 원양연승의 경우는 1회 전재를 하기 위하여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달 반에서 두 달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원양선망이나 포클랜드 오징어잡이 원양트롤, 원양오징어채낚기의 경우 고기가 많이 잡히면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전재를 한다. 소량의 어획과 단일 어종을 포획하는 어선에서는 10%의 규정을 지키기에는 별 무리가 없다. 그러나 대량 어획과 다수의 어종을 포획하고 장기조업을 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경우는 이 규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법으로 제정을 해놓았지만 변경신고라는 조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신고를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라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시행 2015.7.7]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76호, 2015.7.1, 제정])의 제3조(전재 허가신청 등) ① 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는 전재 작업 시작 24시간(해당 전재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수산물기구 관리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국제수산물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작성한 전채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장 또는 선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채 허가신청서 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전채 변경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③항이 그 주 내용인데 어종별 10%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문이다. 단순히 IUU 어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채에 관련된 고시를 제정하였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다. 전 세계 원양어선을 관리하는 조업감시센터에서는 주·야로 계속 교대 근무를 하는 한사람이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 업무만 해야 된다.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된다면 반드시 수정되어 현장의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5. 어선위치추적장치 (VMS, Vessel Monitoring System)

현 원양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선위치추적장치(VMS)의 내용을 급하게 제정하면서지 몇 가지 누락된 부분들과 국제수산물기구들의 요건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로는 성능과 보고에 관한 것으로, 현재 어선에서 조업감시센터(FMC)로 매 1시간 마다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있어 위치보고 주기

를 현행화 할 필요가 있다. 아래 조문을 살펴보면 VMS의 설치와 요건만 명시되어 있고 보고에 관련된 전송 주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박에서 전송되는 선박 데이터의 신뢰도인데 선박의 어선위치 추적장치 고유번호 (VMS ID), 선박의 위치, 속력, 침로, 시각 (UTC) 정보는 VMS로부터 자동으로 발신되어야하며, 선박에서 수동으로 조작과 변경이 불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VMS의 봉인장치에 관련된 사항으로 VMS 안테나와 단말기의 이설 방지를 위한 봉인장치와 설치 규정인데 VMS 성능기준과 형식승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으로는 VMS를 구성하는 요소인 안테나, 케이블, 전원부는 장착된 곳에서 제거될 수 없도록 봉인할 것을 의무화 하고, 봉인방법은 정부가 승인한 특수 제작한 보안 접착테이프 또는 철재 연결선을 이용한 VMS 안테나 내·외부나 또는 케이블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고, VMS 봉인함에 센서를 부착하여 개봉이나 이설 시에 조업감시센터에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VMS의 보조전력에 관한 사항으로 VMS 전원 공급이 차단 될 시 일정시간 동안 위치전송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체 전력이나 보조 전력(Battery or UPS)의 공급 장치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VMS 전원이 차단된 후 약 3개월 정도 VMS를 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1일에 약 1~2회 정도 위치 발신을 자동적으로 하여 FMC에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지신청에 관한 조항 신설이 필요한데 아래 표의 원양산업발

전법 시행규칙의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제4항에 의거 항상 VMS는 정상상태로 작동되어야 하나, 전원 공급이 중단 되는 경우는 선박이 어기 종료로 장기체항이나 수리 등으로 항구에 입항하여 VMS의 전원을 OFF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를 대비한 예외 규정의 조항이 필요하다.

CCAMLR와 IOTC에서는 1주일 이상 항구에 정박하는 어선에 한해 사전에 기국에 연락 후 중지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는 장기체항 등의 사유 발생 시 VMS 정지신청 사유서를 선사나 선박에서 FMC로 제출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그리고 VMS의 고장 발생 시에는 선박의 위치를 수동으로 보고하는데, 수동 보고의 기준 개선이 RFMO 등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보고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래 표는 RFMO 별 VMS 관련 (Source: Fisheries Monitoring Center, 2016) 보고대상, 보고주기, 수동보고 와 수리기한, 보안과 기밀성, 작동의 규정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향후 관련 규정 제정 시 참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원양산업발전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Table 3-2. VMS Requirements in RFMOs (December 31 2016)

RFMO	Reporting to	Interval	Manual Reporting/Repair Period	Security/Confidentiality	Permanent operation
SEAFO	Flag State	2 hour	1 day 1 month (next trip)	-	○
WCPFC	Secretariat / Flag State	1 hour	6 hour 1 month	Tamper-proof seal	○
CCAMLR	Flag State	4 hour (1 hour As of 2019)	4 hour 2 months(next trip)	Seal	prohibition on power disconnection
NAFO	Flag State	1hour	4 hour 1 month(next trip)	-	○
IATTC	Secretariat / Flag State	4 hour for longliner 2 hour for other types)	1 month (next trip)	Tamper-proof	○
SPRFMO	Flag State	2 hour	quarterly report	Tamper-proof seal	○
IOTC	Flag State	4 hour	4 hour 1 month (next month)	Official seal	○
CCSBT	Flag State	To a level where fishing can be monitored	To a level where fishing can be monitored	Official seal	○
ICCAT	Flag State	4 hour	1 day 1 month (next trip)	-	○
EU	Flag State	2 hour	4 hour next trip	-	○
FAO VMS 지침서	Flag State	1 hour	-	relocation-proof seal (recommendation)	○

Table 3-3. Amended DWFD Act and its Enforcement Rules (Draft)

Current Provisions of DWFW Act	Amended Version (draft)
Article 15 (Installation of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① A distant water fishery operator shall install a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on the permitted fishing vessel under Article 6 (1) prior to departing from port. <Amended by Act No. 11982, Jul. 30, 2013> ② An operator of a overseas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who has been registered as a fishery products transportation business pursuant to Article 24 (2)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shall install a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Newly Inserted by Act No. 13001, Jan. 6, 2015> ③ Requirements for vessel monitoring systems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othe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mended by Act No. 8852, Feb. 29, 2008; Act No. 11690, Mar. 23, 2013; Act No. 13001, Jan. 6, 2015>	Article 15 (Installation, etc of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① A distant water fishery operator who is authorized to fish in a distant wa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1) and An operator of a overseas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who has been registered as a fishery products transportation business pursuant to Article 24 (2)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shall install a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and send its positions, etc. to Fisheries Monitoring Center every one (1) hour ② An operator of a overseas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who has been registered as a fishery products transportation business pursuant to Article 24 (2)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shall install a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Deletion) ③ No amendment

Current Provisions of Enforcement rules	Amended Version (draft)
Article 24 (Requirements. etc of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① A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1) of the Act shall have functions to report the following data to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FMOs or coastal States in an automatic manner <Amended on July 7, 2015>	Article 24 (Requirements. etc of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① A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1) of the Act shall have functions to report the following data to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FMOs or coastal States every one hour
1. information relating to a vessels including vessel name, call sign, flag, tonnage, etc. 2. Geographical position 3. Date and time of a fixed position ② The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shall have the format and structure necessary to prevent false data input/output by electronica means, and shall not be modified. ③ The antenna connected to the device are not blocked or covered, power supply of the device is not interrupted.	1. Fishing vessel identifier (ID) 2. Geographical position (Longitude/Latitude) 3. Date and time of a fixed position ② The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shall be located within a sealed unit to ensure the device is free from any modification. ③ In case of no power supply for a reasonable ground, the vessel shall be equipped with a supplementary battery to send positions at least once every day for three months.

Current Provisions of Enforcement rules	Amended Version (draft)
④ The device shall not be moved from the fishing vessel, and the master of a fishing vessel shall ensure a normal function of the device at all times. ⑤ In the event of a technical failure or non-operation of the fishing monitoring device fitted on board a fishing vessel, the master/owner of a fishing vessel shall repair or replace the device within a month, and otherwise the master/owner of a fishing vessel shall stop the trip and return to the nearest port without delay to repair or replace the device. <Amended on July 7 2015>	④.....In case a fishing vessel is in port more than a week, it is allowed to stop the operation of the device after pre-notification o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first position after re-powering shall not be changed compare to the last point. ⑤ No amendment

제4장 결 론

원양산업발전법을 제정함에 있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실정과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개정된 사항들은 전혀 현실성이 없고 실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업계의 상황을 좀 더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신중하게 제·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원양산업발전법 내의 벌칙규정의 세분화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특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수산기구나 선진국의 벌칙규정을 무조건적으로 모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조문들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원양산업발전법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 가지 보완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5년 개정 법률은 여러 차례 설명회를 거쳐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설명회 자체가 육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원양어선에 경험이 있는 직원은 몇 명에 불과하였을 뿐이다. 정부 측에서는 예비 IUU 어업국 해제를 위하여 미국과 EU의 눈치를 보며 급급하게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대양에서 조업을 하는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들은 반영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물론 입장의 차이와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점이 많지만, 원양산업발전법의 내용 중 원양어업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이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원양어업종사자들이 수궁하지 못하는 **벌칙규정**이다. 다른 나라들의 IUU어업에 관련된 제도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선진국들의 제도들만 보고 인용하여 법의 저축을 받는 원양어업종사자들만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후진국들도 어떠한 벌칙규정과 제도

를 운용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재허가제도**이다. 위의 각각 지역수산물기구들의 전제 규정을 살펴보면 전제에 관한 허가 제도를 사용하는 EU나 지역수산물 관리기구도 없으며 대부분 신고에서 모든 것이 처리된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이다. 다른 부분은 EU IUU 통제 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전제허가제도의 경우도 신고제로 하여 전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어종별 10%** 규정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EU는 원양어업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연·근해에서 조업이 거의 이루어진다. 출항 후 2~3일이면 항구로 귀항하여 포획한 어획물의 수량을 신고하고 판매하여 보고하는 제도로 어획총량의 10%의 규정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경우는 어떠한가? 원양연승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약 45일~60일 정도 조업으로 1회 전제를 한다. 하루에 적은 양만 차이가 나도 45일 이상이면 어종별 10%를 넘는 것은 시간문제 일 것이다. 하루빨리 어획총량의 10%로 개정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원양산업발전법 내의 IUU 관련된 사항들을 분법하여 IUU 통제법으로 제정한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IUU 통제는 원양어업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근해에서도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추가해야 될 부분으로는 외국어선에 대한 IUU 관련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연근해를 IUU 내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산관련 법령과 EEZ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연근해와 EEZ 관련 법 처벌들의 규정 사항이나 원양산업발전법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현재 원양산업발전법 내의 IUU 통제는 원양어업을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의 경우 법률 적용 대상자가 1천명 이하로 법률의 과편화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3개법 ((가) 원양산업법, (가) IUU 통제법, (가) 해외투자촉진법)으로 분법 하는 것을 추진 중이지만 원양산업발전법과 IUU 통제법으로 2개 법안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 관련 사항들은 원양산업발전법 내의 조문에 포함시키면 차라리 내용상이나 조문의 상으로나 알차게 개정되리라 본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법 제목을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원양어업법이나 원양산업법으로 바꾸고, 원양어업종사자들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조문들과 개정이 필요한 조문들을 보충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FMC의 어선 모니터링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의 항만국 검색과 어획증명서 발급·검증, 그리고 선박에서 전자조업보고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FMC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어획량 관리 등을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스페인이나 덴마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IUU 어업에 대한 통제는 어선을 감시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독립기관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거 IUU 어업의 형태들을 검토·분석하여 정리하였고, 이전의 IUU 어업의 파악을 위하여 문헌적 연구와 지역수산기구들의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였다. 특히 원양산업종사자 및 관계자들과 많은 소통을 통하여 원양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 문헌

- ACT, A. 1996.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Public Law, 94, 265.
- CCAMLR. Schedule OF Conservation Measures IN Force 2014/15 Season, Resolution 7IX ~34X X X I .
- CEIMARE. African Maritime and Fisheries Regulations. Korea-Spain Maritime and Fisheries Research Cooperation Center.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in Spain, 1-303.
- FAO. 2016. Fisheries and Aquaculture Report No. R1078, 2-5.
- GREENPEACE. 2012. IUU Fishing and Human Rights Abuse Scandals and Flag State Responsibility. Greenpeace East Asia Briefing. Korea Distant Water Fisheries, 1-12.
- GREENPEACE. 2016. Slavery and Labour Abuse in the Fishing Sector, Greenpeace Guidance for the Seafood Industry and Government. Greenpeace East Asia Briefing. Korea Distant Water Fisheries, 1-15.
- HAN, D.H. 2015. A Study on International Regulatory Changes and Countermeasures in Fisheries Sector. Korea Ocean Fisheries Development Institute, 1-140.
- LEE, J. G. 2015. A study on EU listing Korea as yellow-card non-cooperating third countries against IUU fishing and Korean countermeasure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7(4), 912-923.

- PARK, M.K. 2014. Restructuring Korean Fishery Penalty Regime to Deter and Eliminate Illegal Fishing. *Ocean Policy Research*, 29(2), 205-237.
- EU Regulation, C. 2008. No 1005/2008 of 29 September 2008 establishing a Community system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mending Regulations (EEC) No 2847/93, (EC) No 1936/2001 and (EC) No 601/2004 and repealing Regulations (EC) No 1093/94 and (EC) No 1447/1999. Cit:[Council Regulation (EC) No 1005/2008], 35-84.
- EU Regulation, C. 2011. No 1005/2008. Establishing a community system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419-515.
- Reuchlin-Hughenoltz, E., & McKenzie, E. 2015. Marine protected areas: smart investments in ocean health. World Wide Fund, Gland, Switzerland, 11.
- The Fisheries (Management and Development) Decree, 1994. Supplement to the Sierra Leone Gazette Vol. CXXV, 58 dated 8th December, 1994. 65, 120-192.
- 기니공화국 2014년 어업개발과 관리계획 법령, No A/2014/019 MPA/CAB/SGG, 2014, 10-28.
- 기니공화국 2016년 어업관리계획 법령, No A/2016 003 MPA/CAB, 2016, 31-52.
- 기니비사우 수산업법 법령 제10/2011, 2011, 81-87.

농림수산물부. 2010.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IUU 어선 등재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3-7.

농림수산물부, 2012, 박원석, 최원목 국제수산물규범의 국내이행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119-123.

대만 원양어업법 (Act for Distant Water Fisheries, 2016) 2016, 7-20.

임성수, 2012, 어업분쟁 및 IUU 어업예방을 위한 어업지도 체제 개선, 15-26.

해양수산부. 2014. 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1-129.

해양수산부. 2014. 원양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연구, 39-50.

해양수산부. 2014. 제4회 국제수산업 지도단속 훈련 워크숍 보고서. 1-72.

해양수산부. 2016. 2015 원양산업 실태조사, 8-25, 34-41.

<http://www.fao.org/climatechange/youth/78616/en/>

http://www.nmfs.noaa.gov/aboutus/our_mission.html

부 록

1. 원양산업발전법 제·개정 연혁	66
2. 우리나라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s) 가입 현황	71
3. 항국구 조치 협정 주요 내용	72



1. 원양산업발전법 제정[시행 2008.2.4.]

◇ **제정이유** 「수산업법」과는 별도로 이 법을 제정하여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원양어업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 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양산업의 정의 등(법 제2조)

원양산업의 정의를 원양어업과 원양어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고, 원양어업 등의 정의도 함께 명시함.

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법 제4조 및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양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다. 원양어업의 허가 등(법 제6조~제17조까지, 제29조~제36조까지)

현행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양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및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국제규범 준수 등을 위한 원양어업허가제한에 관한 사항과 국제수산기구 등에서 결의된 의무사항을 명시함.

라. 국제협력과 연구개발(법 제18조부~제21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마. 명예해양수산관제도의 운영(법 제22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및 지원(법 제24조 및 제25조)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조세에 대한 특례(법 제27조)

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시행 2010.3.1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시행 2014.1.31]

◇ 개정이유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중대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의무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내국인 선원의 양성과 교육에 대한 지원, 해외 원양어업 선원복지에 대한 관리와 국내 이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양어업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다. 현행은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라면 모두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입항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한 선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만국 검색을 강화함(안 제14조)

라. 현행은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에만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마. 국제수산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내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제6호)

바. 해외 원양어업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 등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사. 중대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신설)

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시행 2014.3.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로 변경되었고,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바, 원양어업의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대표자인 법인 포함)을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시행 2015.7.7]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해외수역에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에 가담한 원양어선과 자국민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도 국제규범과 서로 달라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에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획물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며,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물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를 새로 정의함(제2조).

나.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승계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제한함(제6조제11항 및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해외수역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라.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제13조제2항).

마.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바.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통제 강화를 위하여 벌칙을 강화함(현행 제29조 삭제, 제33조)

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시행 2017.4.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2008년 2월 법률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원양산업발전심의회 개최실적이 5회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어선의 침몰 등의 사유로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2017).

부록 2

우리나라 지역수산기구 가입현황(가입18, 가입추진3, 2016.12월)

		기구(회의)명	가입일	본부	회원국	협약목적
지역 수산 기구	참치 기구 (5)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70.8	마드리드	EU 등 48개국	대서양 참치자원 보존 및 이용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96.3	세이셸	EU 등 31개국	인도양 참치자원 보존이용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01.10	캔버라	일본 등 5개국	남방참다랑어 자원 보존관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04.11	미크로네시아	호주 등 26개국	태평양수역 참치자원 보존관리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05.12	라호아	미국 등 15개국	동부태평양 참치자원 보존관리
	非참치 기구 (13)	국제포경위원회(IWC)	'78.12	캠브리지	일본 등 88개국	고래자원 보존관리, 상업포경
		남극해양생물보존위(CCAMLR)	'85.4	호바트	호주 등 24개국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
		중부베링공해명태협약(CCBSP)	'95.12	시애틀	미국 등 6개국	중부베링해 명태 보존관리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NPAFC)	'03.5	밴쿠버	캐나다 등 5개국	연어자원 보존관리
		북서대서양수산위(NAFO)	'93.12	캐나다	캐나다 등 12개국	북서대서양수역 수산자원 관리
		중동대서양수산기구(CECAF)	'74.1	FAO	일본 등 32개국	중동대서양수역 수산자원 관리
		중서대서양수산기구(WECAFC)	'74.1	FAO	이태리 등 33개국	중서대서양수역 수산자원 관리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11.4	나미비아	앙골라 등 5개국	남동대서양 수산자원 최적이용
		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SPRFMO)	'12.4	뉴질랜드	EU, 칠레 등 12개국	저층어업 및 비참치어종 관리
		아시아.태평양수산위(APFIC)	'50.1	방콕	호주 등 20개국	수산정책 수립 및 이행지원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PICES)	'92.3	캐나다	미국 등 6개국	해양생물 및 환경 과학적 연구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14.10	레위니옹	EU, 일본 등 8개국	남인도양 수산자원 보존관리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16.6	동경	일본, 미국 등 7개국	저층어업 및 비참치어종 관리
	가입추진 (3)	남서대서양수산기구	'16년추진	미정	한국, 일본 등 7개국	저층어업 및 비참치어종 관리
		지중해수산위원회(GFCM)	'16년추진	FAO	일본, 터키 등 20개국	비참치어종 관리
		북극수산위원회	'16년추진	미정	미국, 일본 등 5개국	북극수역 수산자원 관리

조업감시센터, 2016.

부록 3

항구국 조치협정 주요내용

□ 적용대상 선박(제1조c·d·j항, 제3조)

- 항구에 기항하는 **외국 선박**(자국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음)

- 어업 : 어류의 탐색, 유인, 위치 파악, 어획, 채포, 수확
- 어업관련 활동 : 어업을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활동(어류의 양륙, 포장, 가공, 전제, 운반, 인력·연료·장비 및 보급품 제공 포함)

- 어업 및 어업관련 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선박
- 조업선, 운반선 뿐 아니라 급유선, 컨테이너 선박 등도 적용대상임
- * 단, 어획물을 적재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하역된 어획물을 적재한 컨테이너 선박은 적용에서 제외됨

□ 항구지정(제7조)

- 항구국은 동 협정에 근거하여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지정하여 그 목록을 FAO에 제출

□ 항구 접근에 대한 사전 요청(제8조)

- 항구국은 입항허가 전에 해당 선박에 대해 부속서 A에 제시된 ‘사전통지서’ 제출

□ 입항허가 또는 금지(제9조)

- 항구국은 제8조의 사전통지서를 바탕으로 입항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선박에 통보 / 선박은 입항 시 관련 당국에 허가서 제출
-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 관리하는 IUU 목록에 등재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거부

□ 항구사용(제11조)

- IUU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입항은 허용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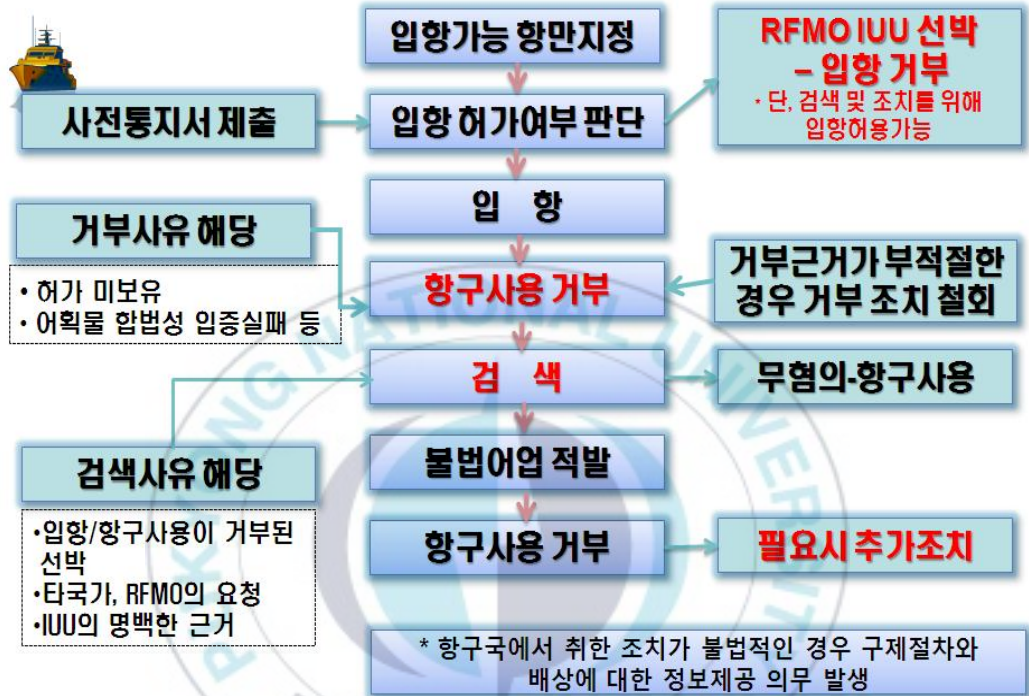
당할 경우 일체의 항구 서비스(양륙, 환적, 연료 공급 등) 사용 거부

- 기국이 발급한 유효하고 적용가능한 허가 미보유
- 연안국 관할권에서 요구되는 유효하고 적용가능한 허가 미보유
- 동 선박의 선상 어획물이 연안국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어획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받은 경우
- 기국이 선상 어획물에 대한 합법성 입증에 실패한 경우
- 기타 IUU에 가담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 검색 후 항구국 조치(제18조)

- IUU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검색 당사국은 즉시 기국과 필요시 관련 연안국, RFMO, 국제기구, 선장의 국적국에 동 사실을 통지
- 동 선박에 대해 어획물의 양륙, 환적, 포장, 가공, 연료 및 물자공급, 정비, 드라이도킹(drydocking) 등 일체의 항구 서비스 사용 거부

〈 항구국 조치 흐름도 〉



감사의 글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포기할까도 생각했다가 문득 도전을 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많은 않았다. 장창익 지도교수님께서 “그래도 대학원에 왔으면 논문은 써야지” 하시면서 포기하려는 나를 다독여 주시고, 바쁘신 와중에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논문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 덕분에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일 박사님, 이경훈 교수님 많은 질문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독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도움을 주었던 임정현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논문이 제출될 수 있게 스케줄 관리 등 많은 도움을 준 임정민조교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을 감시·감독을 위하여 교대근무를 하면서 강의 참석이 가능하게 시간을 배려 해 준 우리나라 조업감시센터(FMC)에 근무하는 직원들 및 김수연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큰아들이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과 곁에서 항상 내조를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영주, 아들 동선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이 작은 결과를 마무리 합니다.

- Si no se ejecuta no se puede conseguir nada -